

「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12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- 나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시설물 접근·이용의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점검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시공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물론이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다.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허가, 시공,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,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,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여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과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함(안 제3조, 안 제4조).
- 다. 이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장애인 단체, 관련 시민단체,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사전점검요원이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점검,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(안 제6조, 안 제8조).
- 라.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사전점검요원의 편의시설 점검지식을 습득하고 점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10조).
- 마. 그리고 사전점검에 대한 취지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협조하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,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과 관계기관,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설주관기관의 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음(안 제11조).
- 바.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 시 시설주는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(안 제12조),
- 사.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13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1일까지(1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(참조: 문교사회전문위원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,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사전점검”이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시설주관기관의 장”이라 함은 광역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.

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4조(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「건축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전점검 대상)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.

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전점검시기 및 방법)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.

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,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.

제7조(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)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사전점검요원의 구성)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 단체, 인천광역시 건축사회, 학계, 공무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21인 이내로 위촉한다. 단 사전점검요원의 1/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.

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)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히 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)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)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

여야 한다.

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설주의 의무)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(경비의 지원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